##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62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 박용갑·장철민·서범수

윤준병 • 박희승 • 이건태

이병진 · 박상혁 · 염태영

소병훈 · 조승래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대구, 광주, 대전, 부산,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,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『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』을 발표함.

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, 투자,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,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.

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·투자·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 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	제9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	②		
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			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	2		
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			
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			
출자・투자 또는 융자	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라.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		
	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		
	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		
	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		
	요한 비용		
2의2. ~ 6. (생 략)	2의2. ~ 6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